

<연구노우트>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洪 斗 承

(서울大 社會大 教授)

<차례>

- I. 서 론
- II. 직업과 계급구조

- III. 계급구조의 변화

I. 서 론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직업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를 서술하면서, 직업분류가 사회계층연구에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계층연구에서는 직업적 지위를 여러 계층변수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변수들(예를 들면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직업의 지위란 삶의 기회를 보다 포괄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변수로서 설사 모든 것을 반영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 직업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나타난 직업명에 한정짓고 있다. 물론 직종의 명칭이나 동일한 명칭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직업분류상의 명칭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반드

* 본 연구는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구 센서스에 관한 권태환교수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자료처리에 대학원 사회학과 김병관군의 도움이 커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로 계급구분을 위해서 직업의 분류는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갖고 인구센서스에 사용되는『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하여 계급구조를『파악하고, 둘째로는 이렇게 구성된 계급의 모형이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계급분류의 기준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론적 바탕이나 이와 관련된 논쟁점보다는 실제 분석시에 부딪치게 되는 보다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일반적으로 논문이 갖는 체제를 갖추었기보다는 연구노우트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조사의 통일을 기하고 국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3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주관하여『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하였다. 물론 그 이전의 인구센서스에서도 국제표준직업분류등을 참조하여 직업분류표를 작성하였으나¹⁾ 보다 포괄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1963년에 이르러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직업체계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57개, 그리고 소분류 260개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사통계국에서는 1966년에 직업분류체계에 1차개정을, 1970년에는 1969년에 배포된 국제노동기구(ILO) 발행『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간으로 하여 2차개정을 실시하였고, 1974년에는 이를 보완하여『개정한국표준직업분류』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4년도 개정의 결과로 직업분류는 대분류 8개, 중분류 83개, 소분류 286개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서 1,532종에 달하는 다섯 단위의 세분류까지도 마련되었다. 1974년까지 3~4년 간격으로 개정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1960년 아래의 인구센서스에서 사용되는 직업의 분류는 때에 따라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간별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1) 예를 들어, 1960년에는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센서스용으로「職業分類」를 마련하였다.

인구센서스자료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구조파악에 필요한 자료는 전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는 인구센서스자료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1960년이다.²⁾ 계층분석에 소요되는 직업의 분류는 가급적 자세하여야 하며, 적어도 세단위 숫자로 나타나는 소분류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1960년 인구센서스보고를 제외하고는 정규적인 보고서에는 두 단위의 중분류까지만 제시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원래의 표본자료를 다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 획득될 수 있는 표본자료는 1970년 이후의 자료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1%), 1975년(1%), 그리고 1980년(2%)의 것은 원래의 자료를 사용하고, 1960년도의 것은 보고서로 발간된 20% 표본조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계층분석을 위하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구는 20~65세의 남성 경제활동 인구이다. 그러나 1960년 경우에는 대상인구의 직업분포를 적절하게 분리해 낼 수가 없어서 세는 나이 13세 이상의 남성경제활동인구 모두가 분석에 포함되고 있다.³⁾ 따라서 1960년 센서스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로, 만나이 12세(세는 나이 13세) 이상의 남성노동인구가 모두 포함됨으로 인하여, 12~19세, 그리고 66세 이상의 연령층이 갖는 특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고, 둘째로 1960년 인구센서스에 사용된 직업분류는 1970년 이후의 것과 얼마간의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즉 1970년 이후의 분류에는 분리된 범주로 되어 있는 것이 1960년의 분류에는 통합된 범주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60년에는司法關係從事者로 되어 있었던 것이 1970년에는 변호사(소분류 번호 121; 이

2) 직업분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센서스 가운데 현대적인 직업개념을 사용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1960년 인구센서스가 처음이었다. 그 이전의 센서스에서는 직업과 산업을 바로 구분치 않고, 직업분류 속에 산업분류를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었다.

3) 1960년 센서스에서의 연령은 세는나이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센서스의 완결연령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어진(세는) 나이에서 1세를 감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Kwon(1977: 7~16)을 참조할 것.

하 팔호 안의 숫자는 직업분류번호를 가리킴), 판사(122), 검사(1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무종사자(129)로, 그리고 1974년에는 변호사 및 검사(121), 판사(12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무종사자(129)로 나누어지게 된다. 司法關係從事者가 모두 동일한 계급의 범주로 분류된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겠으나, 만약 이들이 별개의 범주로 묶어진다면 사법관계종사자의 총수에서 변호사 및 검·판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히 추정해 내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된다.

Ⅱ. 직업과 계급구조

이 논문에서는 계층질서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의 하위개념으로서 계급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부문과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洪斗承, 1983a).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직업의 세부적인 명칭과 종사상의 지위를 상호교차시키어 계급을 파악한다. 구체적인 직업이 종사상의 지위와 결부되어 어떻게 계급의 범주로 묶어지고 있는가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계급의 용어에서 신중간계급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신중간계급의 범주에는 중상계급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전형적인 화이트칼라와는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유용하다.

자영업부문에 있어서는 자영서비스직 종사자와 자영기능인을 묶어서 중하계급(또는 주변중간계급)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사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 육체노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별개의 범주로 묶고 있다. 물론 이들은 자영의 관리적, 전문적, 판매적 종사자와 함께 구중간계급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이제 각 직업군과 계급분류와의 관계를 분류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전문직종사자

전문직·전문기술직 종사는 대부분의 경우, 고등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때로는 창조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개인적인 재능이 더 요구되는 직종도 포함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것이 전문직종사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

은 아니다. 여기서 전문적·전문기술적 종사자들은 그 전문성 및 기술수준에 따라 고위전문적 종사자와 그 이외의 전문적 종사자로 구분하고, 고위의 전문적 종사자들은 자영업주이든 임금/봉급생활자이든 모두 중상계급으로 뮤고 있으며, 기타의 전문적 종사자들은, 피고용인 경우는 신중간계급으로, 자영업주인 경우에는 자영전문적으로 보아 구중간계급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술수준에 따른 직업분류는 技術者(engineers), 技術工(technicians), 技能工(skilled workers)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 피고용인 경우 이들은 각각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그리고 근로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간의 구분을 과연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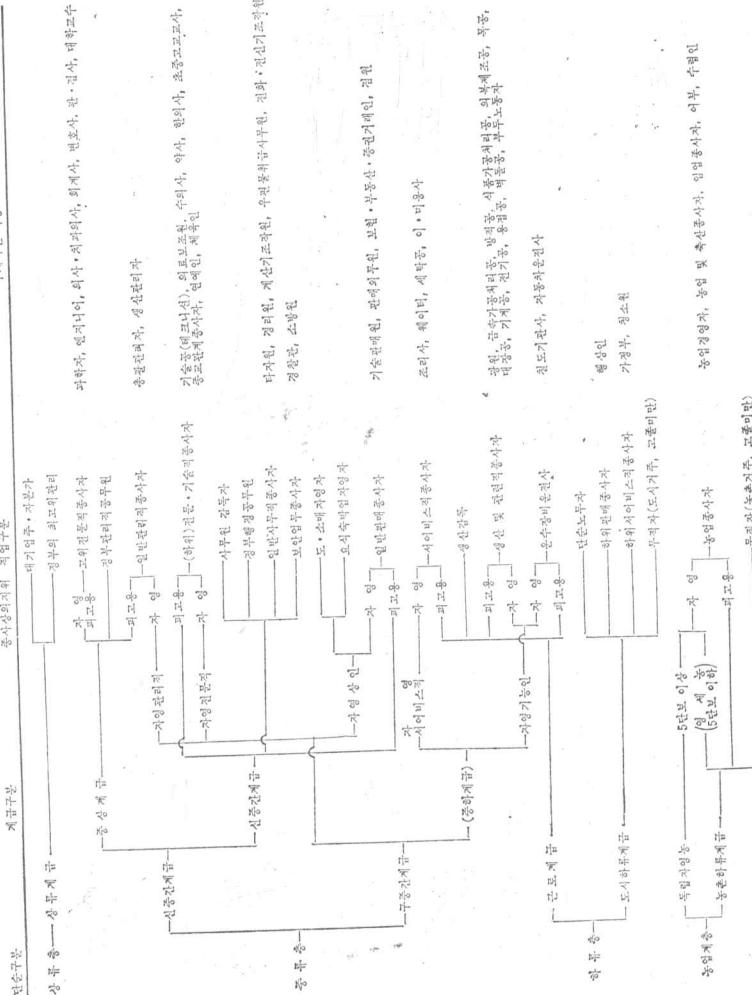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볼 때, 기술자란 과학, 기계공학 등 전문적인 직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고등교육과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고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서 때로는 학위, 졸업증 또는 특정자격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기술공은 기술자와 유사한 직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유자격 전문적 종사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일하고 있다. 기능공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업무와 직능을 수행하며, 특수종류의 자동 또는 반자동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ILO, 1969).

따라서 직업분류에 교육수준자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는 대체로 정규공과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며 일정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기술공은 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 소지자이고, 기능공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나 다년간의 현장 훈련을 통하여 수련된 기능을 갖추게 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이들간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 1980년 센서스자료를 통하여 대표적인 몇몇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면, 기술자는 7할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며(대학졸업이상의 학력소유자는 전체기술자의 68%), 기술공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각각 반을 차지하고 있고, 기능공(반숙련공 포함)은 66%가 중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표 1> 참조). 따라서 이들간 학력 격차는 전반

〈그림 1〉 지역부동산을 통한 계급구조

卷之三



<표 1>

기술수준별 학력, 1980 (여성포함)

기술수준	학력					합계 (%)	N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초급 대학	대학교 이상			
기술자							
건축 및 도시계획기술자 (021)	2.7	22.6	9.1	65.6	100.0	186	
토목기술자 (022)	1.2	11.0	14.6	73.2	100.0	82	
전기 및 전자기술자 (023)	0.0	20.1	11.5	68.3	100.0	139	
기계기술자 (024)	2.0	12.2	8.2	77.6	100.0	98	
화학기술자 (025)	0.0	6.1	6.1	87.9	100.0	33	
금속기술자 (026)							
광산기술자 (027)	16.1	9.7	0.0	74.2	100.0	31	
산업경영기술자 (028)							
기타기술자 (029)							
기술공							
토목기술공 (033)	9.8	49.2	6.6	34.4	100.0	61	
전기 및 전자기술공 (034)	5.1	35.9	14.1	44.9	100.0	78	
기계기술공 (035)	11.0	61.6	9.6	17.8	100.0	73	
화학기술공 (036)	0.0	37.0	18.5	44.4	100.0	27	
금속기술공 (037)							
광산기술공 (038)	6.8	28.8	6.8	57.6	100.0	59	
기타 공학기술공 (039)							
기능공 및 반숙련공							
광원, 채석원, 굴정원 등 (711-713)	86.3	12.6	0.3	0.8	100.0	1,142	
금속가공처리공 (721-729)	59.5	35.0	2.0	3.5	100.0	1,110	
화학물 가공공 등 (741-749)	60.6	32.8	0.9	5.6	100.0	673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구제작공 (841-849)	54.0	40.8	1.6	3.6	100.0	5,050	
전기설비공 및 관련전기전자공 (851-859)	44.1	49.4	2.4	4.2	100.0	3,177	
벽돌공, 목공 및 기타 건설종사자 (951-959)	82.4	16.1	0.2	1.3	100.0	7,260	

출처 : 1980년 센서스 2% 표본에서 계산.

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뚜렷하나, 계급적 구분은 학력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⁴⁾.

4) 기술수준별로 학력수준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은 직업구분시의 오류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직업에 관한 사항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응답될 경우와 응답된 내용을 코딩할 때 있을 수 있는 판단상의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에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공무원(201)과 정부관리직공무원(202)은 중상계급으로 분류하고, 총괄관리자(211), 비농업생산관리자(212)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자(219)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분류한다. 즉 고용주와 자영업주는 자영관리직종사자로서 구중간계급에 포함시키고,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중상계급으로 간주하였다.

동일한 관리직종사자라 하더라도 종사하고 있는 회사(또는 기타 조직체)의 규모에 따라 그 계급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으나, 인구센서스에서는 종업원의 수나 자산규모 등으로 나타나지는 조직체의 크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회사의 중간관리층은 중상계급으로, 그 회사의 소유주 사장은 구중간계급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무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봉급생활자로 보고, 신중간계급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 사무직종사자란 금전거래, 인사, 문서통신, 그 이외의 일상업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기록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이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직종사자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는 활동이 주로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에 더 가까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안내원(360), 우편물취급사무원(370),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380), 속기사, 타자원 및 전신타자원(321), 카드 및 테이프천공원(322)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계급분류에 있어서도 중하계급 즉 주변적 중간계급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매 종사자

판매종사자 중 행상인, 외판원 및 신문팔이(452)는 그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도시하류계급으로 간주하였다. 도소매자영자(410) 뿐만 아니라 기타 판매종사자들도 그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업주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상인으로 간주하여 구중간계급으로 보았다. 피고용근로자는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직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적 요구에 따라 식사, 위안, 휴양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요식숙박업자영자(510)의 경우는 도소매자영자(410)와 더불어서 자영상인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비스직종사자는 그 직군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종사자(540),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552)는 그 종사상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모두 도시하류계급으로 분류한다.

보안업무종사자 중 소방원(581), 경찰관 및 수사관(582),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안업무종사자(589)는 그 성격상 서비스직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행정공무원(310)과 함께 신중간계급의 범주로 묶어지고 있다. 그 이외의 서비스직종사자들은 종사상의 지위가 고용주 또는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일 때에는 자영서비스직종사자로 보아 구중간계급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임금/봉급근로자일 때에는 근로계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산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이 범주 속에는 광물체굴, 원료가공, 제품의 생산 및 수선, 운수장비조작, 그리고 비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종사상의 지위가 고용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일 때에는 자영기능인으로 보아 구중간계급에, 피고용근로자일 때에는 근로계급에 포함시키

고 있다. 그러나 우마부(986)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999)는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도시 하류계급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도시 하류계급이란 반드시 도시거주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더라도 비농업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농촌하류계급이 아닌 도시 하류계급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노동 이외의 단순노동에 종사할 때에는 도시 하류계급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농업종사자

다음으로 농업종사인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 한다. 농업종사인구는 경제기획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분석되기 어렵다. 인구센서스에서 가용한 정보란 직업분류와 종사상의 지위 뿐인데 농업계층의 경우, 이보다는 토지소유면적이나 경작면적이 계급분석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종사자에 대한 분석에는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농업센서스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등 농업에 국한시킨 자료가 더 유용할 듯하다. 더우기 본 연구에서는 독립자영농과 농촌하류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토지의 경작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인구센서스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촌의 계급구성은 5단보 미만의 경작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농업임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가구 포함)의 비율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농업종사자의 수에 적용시켜 추정해낸 농촌하류계급과 그 나머지의 독립자영농층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농업 이외의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숫자는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인구센서스에서 1차산업종사자(20~65세 남성경제활동인구에 국한)중 어업종사자가 5.5%, 순수축산종사자가 1.3% 등 1차산업인구중 비농업인구는 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범주는 마련하지 않았다.

실직자

직업을 통한 계층분석에서 직업이 없거나 직업의 내용을 보고치 않은 인구는 대부분의 경우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계층연구에 있어서는 취업인구

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생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무직자 또는 완전실업자 까지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인구센서스에서는 14세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는 완전취업자(일시휴직자 포함)와 부분취업자를 망라하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짓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중의 실업자는 취업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하고 있지 못한 인구를 뜻하는데, 이는 센서스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간) 중 일거리를 구해본 구직자와 그렇지 못한 비구직자로 구분한다.

비구직의 이유로서는 일시적인 질병이라든가 일기불순 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센서스자료만을 통해서 실직인구를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실업자 중에는 학력수준이 매우 높으면서 기타의 사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층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학력의 소유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실업인구의 사회계층적 성격을 규명하기란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다소 조작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학력수준이 낮으면서(고졸 미만으로 설정)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중 도시거주자는 도시하류계급으로 분류하고 농촌거주자는 농촌하류계급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반면에 학력수준이 높은(고졸 이상) 실직자들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으로 해서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⁵⁾

이러한 분석에서는 앞에서 정의내린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되는 셈이다. 즉 불치의 병을 가졌거나 아니면 일선에서 은퇴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없거나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계계층구조의 틀에서 빠질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만성적인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도시의 주변계층의 탈락으로 약간의 上向偏倚가 있을

5) 1970년도 센서스에서는 14세 이상의 총경제활동인구 중 6.5%가 구체적인 취업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은 “미상” 인구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무직인구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975년에 적용시킨 무직률(4.4%)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무직자를 포함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하류계급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의 비율보다는 다소 낮게 추계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1970년의 각 계급인구의 비율은 도시 및 농촌의 하류계급을 제외하고는 <표 3>에 보고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군인

센서스자료를 중심으로 한 계층분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역군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의『人口住宅國勢調查報告』에서는 남성(13세 이상) 취업인구 500만 5천 6백 50명 중 1.1%에 해당하는 54,860명이 육·해·공군 등의 국군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센서스에서는 직업분류에 「군인」이라는 항목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층분석에서 직업군인들은 모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여성인구

끝으로 계층분석시 여성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일단 여성인구를 제외시키고 있다. 첫째로 1980년의 경우 전국의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359만 5천 명 가운데 36.6%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여성만을 중심으로 보아 14세 이상의 여성인구 1,294만 5천 명중 61.6%가 비경제활동인구(남성의 경우 27.6%)임을 고려할 때에 여성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로, 계층의 단위를 가구중심으로 본다면 여성의 지위란 남성가구주가 不在하거나 또는 있다하더라도 무능력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980년의 경우 전체가구주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10% 미만인 것을 보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일부의 지적대로 도시빈민지역가구의 15~30%로 추정되는 여성세대주가구를 고려한 분석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趙馨, 1982: 155). <표 2>에서 여성가구주의 분포만을 따로 살펴보면, 조형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도시하류계급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중상계급이나 신중간계급에서는 전체가구주 또는 남성가구주의 분포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가구주의 계급별 분포는 가구주의 절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가구주의 분포와 대동소이하다.

〈표 2〉

가구주중심의 계급분포, 1980

(%)

계급구분	가구주	남 성	여 성	전 체
중 상 계 급		1.9	0.2	1.8
신 중 간 계 급		17.5	9.3	16.8
구 중 간 계 급		23.5	27.1	23.8
(자 영 전 문 직)	(0.7)	(0.4)	(0.7)	
(자 영 상 인)	(13.9)	(22.1)	(14.6)	
(자 영 서 어 비 스 직)	(0.9)	(1.3)	(0.9)	
(자 영 기 능 인)	(8.0)	(3.3)	(7.6)	
근 로 계 급		20.2	16.5	19.9
도 시 하 류 계 급		6.0	11.2	6.4
독립자 영농		23.1	26.4	23.4
농 촌 하 류 계 급		7.9	9.3	8.0
합 계	100.0	100.0	100.0	
(N)	(117,837)	(10,987)	(128,824)	

덧붙여서 여성을 포함시켜 분석할 때에 실직인구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등장한다. 여성의 경우 사실상 취업의 의사가 있고, 교육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적절히 노동시장에 흡수될 수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III. 계급구조의 변화*

개 관

이제 앞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계급별 노동인구의 구성을 1960~80년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여온 급속한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도시화의 과정은 직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계층 및 계급구조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계층은 수나 비중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 왔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계층은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그 지위를 다른 계층에게 서서히 물려주면서 전제적인 계층의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 계급 및 계층의 구조도 사회 속의 다른 하위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면서 새로운 혹은 수정된 형태로 전환되

* 내용의 일부는 洪斗承(1983b)에 이미 발표되었다.

〈표 3〉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1960~1980 (%)

계급구분	1960	1970	1975	1980
중상계급	0.9	1.3	1.2	1.8
신중간계급	6.6	14.2	15.7	17.7
구중간계급	13.0	14.8	14.5	20.8
(자영전문직)	(0.3)	(0.5)	(0.6)	(0.6)
(자영상인)*	(6.7)	(9.6)	(9.7)	(12.0)
(자영서비스직)	(0.4)	(0.5)	(0.6)	(0.8)
(자영기능인)	(5.7)	(4.2)	(3.6)	(7.4)
근로계급	8.9	16.9	19.9	22.6
도시하류계급	6.6	8.0	7.5	5.9
독립자영농	40.0	28.0	28.2	23.2
농촌하류계급	24.0	16.7	12.9	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N)	(5,210,137)	(59,332)	(61,715)	(154,630)

* 관리직 종사자로 영세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자영상인에 포함시킴.

어나가고 있다.

1960년 이래의 계급구조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목격할 수 있겠다(〈표 3〉 참조). 첫째로 농촌의 독립자영농과 농촌하류계급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하류계급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로 도시하류계급도 1970년 이후로는 상대적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하류계급의 인구가 적어도 이 기간 중에는 농촌하류계급에서 많이 이입되어 온 것이라고 본다면, 이의 감소는 농촌하류계급(농업노동자 및 영세농인구)의 감소와도 유관하리라 생각된다(徐相穆外, 1981: 105~112).

세째로 신중간계급(화이트칼라)과 근로계급(블루칼라)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지는 조직부문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생산 및 유통과정이 대규모화되어 가고 과거 영세자영업주들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던 도소매 등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점차 확산되어 감으로 해서 대규모조직화의 경향을 보이게 되고 조직 자체도 관료제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네째로 구중간계급의 인구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농촌의 독립자영농을 제외한) 구중간계급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적어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농업인구의 감소를 종사상의 지위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때, 농업인구의 대다수는 자영농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농업인구의 감소는 곧 자영업인구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적 마르크스체급론자들에 의하여 산업화과정에서의 중간계급의 몰락으로 설명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직업구조에 있어서 자영업주의 비율은 반드시 감소하지만은 않았다. 1960~80년간에 종사상의 지위분포의 변화를 도시지역취업자에 국한시켜 보면, 고용주 및 영세자영업주의 비율이 1975년도까지는 비교적 일관성있게 감소하고 있으나, 1975~80년 사이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다섯째로 이 기간 중에 중상계급으로 간주되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는 1970~75년 사이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농업인구를 제외하고 도시인구에만 국한시킨다면 역시 뚜렷한 증가가 보인다. 이는 직업군에 있어서 전문직종사자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문직종사는 1960년에 전국 취업인구의 2.4%였었는데 1980년에는 그 비율에 있어서 2배에 가까운 4.6%에 달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직업의 전문화,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은 이들 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교를 위하여 잠시 戰後 일본사회의 계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서 독립자영농(자영어업인구 포함)의 비율은 1950년에 전체경제활동인구의 44.6%에 달하였던 것이 고도경제성장과 공업화와 더불어서 급속하게 감소하여 1960년에는 30.6%가 되었고, 1980년에는 10% 미만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반면에 1950~80년 사이에 회사의 중역, 관리직 공무원 등 중상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1.5%에서

〈표 4〉 도시지역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 분포, 1960~1980 (%)

종사상의 지위	센서스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영세자영업주/고용주		40.3	30.2	25.7	23.5	28.7
무급가족종사자		5.7	6.6	6.1	6.2	4.9
임금/봉급생활자		54.0	63.1	68.2	70.2	6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분류미상자는 전체비율계산에서 제외.

출처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김영모(1979) 참조.

6.2%로, 신중간계급의 인구는 14.9%에서 31.5%로, 도시근로계급의 인구는 20.0%에서 31.6%로 각각 증가하여 왔다.

한편 도시자영업자 중심의 구중간계급의 인구는 이 기간 중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가 아닌 증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표 5〉 참조).

〈표 5〉는 일부 일본학자들이 마르크스계급이론의 분석틀 속에서 일본사회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한국의 자료와 비교가능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원래의 자료에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인구를 모두 노동자계급(구체적으로는 셀러리맨층, 생산적 노동자층, 그리고 不生產的 노동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묶어 이들 인구의 증가를 兩大階級의 분화에 따른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化〉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 3〉과 〈표 5〉가 정확하게 동일한 기준에 의거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회

〈표 5〉 전후 일본의 계급구성, 1950~1980 (%)

계급*	직업군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자본계급	개인기업주	0.4	0.2	0.2	0.03	0.1	0.1	0.2
중상계급	회사중역·관리직사원 관리직공무원	1.5	1.9	2.5	3.6	4.9	5.8	6.2
신중간계급	전문·기술직종사자(피고용)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피고용) 군인·경관·보안서어비스원	14.9	17.1	19.3	23.5	25.5	29.8	31.5
구중간계급	전문·기술직종사자(자영) 광·공·운수·통신종사자(자영) 판매종사자(자영) 서어비스직종사자(자영)	14.3	15.6	15.0	15.2	16.7	16.7	17.5
근로계급	광·공·운수·통신종사자(피고용) 서어비스직종사자(피고용)	20.0	23.7	29.8	32.0	32.6	31.9	31.6
도시하류계급	완전실업자	2.0	1.9	0.7	1.4	1.3	2.3	2.5
독자영농	농·림·어업종사자(자영)	44.6	37.7	30.6	23.0	18.1	12.7	9.8
농촌하류계급	농·림·어업종사자(피고용)	2.3	2.0	1.7	1.2	0.8	0.7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임.

출처 : 布施鐵治 外(1982:33); 庄司興吉(1982:24)에서 계산.

를 비교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⁶⁾

중간계급의 성장

1960~80년간의 변화의 추세는 중간계급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계급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의 고위전문직 종사자와 정부, 기업체 또는 기타 사회단체에서 고위 행정·관리직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중상계급, 둘째로 기술수준이 다소 낮고, 교육 및 훈련기간이 특별히 길지 않은 일반전문직종사자(피고용자에 국한), 정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의 사무직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는 신중간계급, 그리고 직종에 있어서는 다소 다양하나마 타인에 의해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기자신, 가족성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펼쳐가는 구중간계급 등을 들 수 있겠다(<그림 1> 참조).

왜 이들 세 집단만을 중간적인 계급으로 묶고 생산에 종사하거나 운수장비를 운전하는 피고용육체노동자, 즉 근로계급은 이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보상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하위의 화이트칼라층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블루칼라 근로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산층의 비대가 반드시 인구구성에 있어 화이트칼라층의 증가만을 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계층구분에 있어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와의 구분은 지금까지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모두 포함하여 고용주 및 자영업주로 구성되는 구중간계급은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의 중간적인 위치를 점하는 층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6) 한국과 일본의 분류상의 차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① 독립자영농일자라도 5단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업임금노동자와 같은 범주로 묶어져 있으며, ② 소수의 고위 전문직 종사자는 중상계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③ 완전설업자는 도시하류계급과 농촌하류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④ 남성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 20~65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단 농업계층은 제외시키고,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만을 포괄하여 중간계급으로 규정짓는다면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간계급은 1960년에는 노동인구의 20% 남짓하였던 것이 1970년에는 30%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40% 가까이에 다다르게 되었다. <표 5>에서 일본의 경험을 본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1950년에는 31%, 1960년에 37%, 1970년에 47%, 그리고 1980년에는 5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이것은 독립자영농을 제외시킨 수치이다. 일본의 경우 독립자영농의 성격규정에 따라 이들중 상당부분이 사실상 중간계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촌의 독립자영농을 도시적 의미에서의 중간계급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자 료〉

金 泳 講

1979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제23집.
徐相穆 外

1981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趙 馨

1982 「社會構造의 接近」, 『福祉社會를 向한 綜合的 接近』(학술세미나보고서), 유네스코韓國委員會.

洪 斗 承

1983a 「韓國社會階層研究를 위한豫備的 考察」, 서울大學校 社會學研究會編,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李萬甲教授華甲記念論叢)』, 汎文社.

1983b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庄司興吉

1982 「現代日本の階級と社會意識」, 『社會學評論』第33卷, 第2號.
布施鐵治, 鎌田とし子, 岩城完之(編)

1982 『日本社會の社會學的分析』,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Kwon, Tai 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內 務 部

1960 『擅紀 4293年度 國勢調查用 職業分類』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3 『1960 人口住宅國勢調查報告 : 20% 抽出集計結果』
1963 『韓國標準職業分類』

- 1966 『韓國標準職業分類(改訂版)』
1970 『개정 한국 표준직업분류, 1970』
1974 『개정 한국 표준직업분류, 1974』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69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Revised Edition, 1968.* Geneva.